



정기종합감사 결과보고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

2022. 12.



식품의약품안전처
감사담당관

목 차

I. 감사실시 개요	1
II. 개별처분요구	2
1. 공무직근로자 채용 서류전형 심사업무 부당처리 [징계 경고] ..	2
2. 공무직근로자 채용자격 증명서류 위·변조 여부 확인방안 미비 [통보] ..	15
3. 사업비 예산으로 부서운영비 사용 부적정 [부서주의]	20

I 감사실시 개요

□ 감사목적

- 성과견인형 컨설팅 감사로 평가원의 위해성평가·심사·시험검사·연구개발 등의 성과달성 점검 및 성과책임성 제고

□ 감사대상 및 범위

- 감사대상: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소관 업무전체)
 - 조직 및 인력: 6부 42과 1센터, 정원 459명(현원 440명) ('22. 8. 31. 기준)
 - 예산(억 원): ('19) 1,175 → ('20) 1,276 → ('21) 1,558 → ('22) 1,685
- 감사범위: '19. 5. 1. ~ '22. 9. 30. 간 수행한 업무 전반

□ 감사기간 및 감사인원

- 감사기간: (예비) 10. 17. ~ 10. 21.(5일) / (실지) 10. 31. ~ 11. 11.(10일)
- 감사인원: 감사단장(감사담당관) 등 11명

□ 감사중점

- 부서별 업무수행 실태 점검 및 소극행정 등 취약분야 예방감사
- 예산집행, 업무추진 기준·절차의 문제점 발견 및 개선방안 제시
- 의료제품 심사원 채용의 공정성 등 채용절차 집중 점검

□ 감사결과

합계	행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재정상 조치		
	시정	경고	주의	권고	통보	모범	면책	징계	경고	주의	회수(시정)	환금	
건	명							건	명	건	명	건	금액
4	2		1			1		1	1	1	1		

1) 관련 근거: 「식품의약품안전처 감사규정」(훈령 제144호, 2019. 6. 28.)
2022년도 연간 감사계획(감사담당관-331호, 2022. 1. 19.)

II 개별처분요구

징계요구 및 경고

제 목	공무직근로자 채용 서류전형 심사업무 부당처리
관 계 부 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신속심사과
조 치 부 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운영지원과
내 용	

1. 업무개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 신속심사과는 의약품 제품화 지원 인력으로 사무실무원(공무직) 2명을 공개채용 하였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따르면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안 되도록 하고 있으므로 특정인을 위하여 채용공고문과 다른 채용절차를 진행하여 나머지 다른 구직자들을 불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같은 법 제13조에 따르면 구인자가 채용시험을 서류심사와 필기·면접 시험 등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경우 서류심사에 합격한 구직자에 한정하여 입증자료와 심층심사자료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행동강령」 제6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채용공고문(2020. 12. 22.)에 따르면 [표]와 같이 2020. 12. 22.부터 2021. 1. 17.까지 서류접수, 2021. 1. 19. 서류전형과 1. 22. 면접시험을 거쳐 2명을 최종 합격자로 결정하여 1. 26.부터 근무를 시작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부서는 공무직근로자 채용과정에 응시자격이 미달되는 특정 응시자를 사전에 만나 응시자격 요건을 갖출 방법이나 구제방안을 모의하는 등 특정 응시자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되며, 모든 응시자들에게 채용공고문과 같이 동일한 조건과 응시자격 기준을 적용하여 공정한 채용이 되도록 하고 적기(근무시작일)에 인력이 충원되어 인력공백이 초래되게 하여서는 아니되었다.

[표] 2021년 1분기 의약품 제품화지원 인력 채용시험 실시 현황

채용직급 (근무시작일)	응시자격	채용 인원	응시 인원	서류전형 합격자 수 (서류전형일)	면접시험 합격자 수 (면접시험일)
사무실무원 (2021. 1. 26) ※ 심사원 다급 수준의 보수 적용	1. 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2. 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연구 실적이 있는 자 3. 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연구 실적이 있는 자 4. ~ 6. (생략) 7. 기타 이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명	11명	3명 (2021. 1. 19)	2명 (2021. 1. 22)

자료: 2021년 1분기 의약품 제품화지원 인력 공무직근로자 채용 공고문 재구성

한편 위 채용공고문에 따르면 응시자격의 제2항은 ‘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제3항 적용 시 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 취득자는 5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연구실적이 있는 자’로 되어 있으나, 응시자 중 BBB는 석사학위증명서(2018. 2. 24. 학위 취득)와 2016. 9. 1. 이후의 경력증명서를 응시서류로 제출하여 서류접수 마감일인 2021. 1. 17. 기준²⁾으로 해당 분야의

경력이 석사학위 취득 후 2년 11월(학사학위 취득 후 4년 6월)로 위 응시자격에 미달되었고,³⁾ 본인도 그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가. AAA 연구관의 경우

위 사람은 2020. 8. 31.부터 2021. 5. 11.까지 평가원 신속심사과에서 공무직 근로자 채용업무를 총괄하면서 위 채용과정에서 2021. 1. 19. 2명의 서류전형 심사위원 중 1명으로 서류심사를 하였다.

1) 서류접수 기간 중 응시자격이 미달되는 특정응시자와 경력 충족조건 사전모의

위 사람의 업무범위는 1차 서류전형에서 적격자를 심사하는 것이지 2차 면접시험도 거치지 않은 자격 미달의 특정응시자를 임의로 최종합격 시킬 의사로 서류접수 기간에 그 응시자를 만나 서류전형 통과방법을 알려주는 등의 특혜를 주어서는 아니된다.

그런데 위 사람과 CCC 주무관은 위 채용업무를 처리하면서 서류접수 기간 중 응시현황을 확인하여 BBB가 응시한 사실과 그가 제출한 응시서류로는 응시자격에 미달되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21. 1. 14. 또는 1. 15. 경⁴⁾ 위 사람은 응시자 중 자격이 미달되는 8명에 대해서는 그대로 두고 평가원 임상연구과에서

2) 채용공고에 따르면 장애인 우대를 위한 장애인 등록 유효기준일이 서류접수 마감일 현재까지로 되어 있어 이를 고려함

3) BBB는 2013. 9. 1. ○○대학교 대학원 ○○○○공학과에 입학하여 재학 중인 2016. 9. 1. ~ 2018. 1. 26.까지 ○○○○○○연구원에서 학생연구원으로 근무하였고, 2018. 1. 29. ~ 2018. 3. 20.까지 ○○○○○○에서 의약품 GMP 공장 구축 업무를 하였으며, 2018. 2. 24. 위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2018. 3. 21.부터 위 채용의 면접시험일인 2021. 1. 22. 현재까지 평가원 임상연구과에서 ‘전문연구원 다급’으로 근무하고 있었음

4) CCC 주무관은 AAA 연구관과 BBB를 함께 만난 일자가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BBB의 사유서가 작성된 2021. 1. 16. 이전일 것이라고 진술(2022. 11. 22.)하여 2021. 1. 14. 또는 1. 15.경으로 추정함

공무직근로자로 근무 중이던 BBB가 위 부서에서 근무하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임의로 생각하여 서류접수가 끝나지 않았는데 CCC 주무관을 시켜 BBB을 연구 심사동 5층 휴게실로 불러와 3명이 함께 만나 자신의 경력이 미달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BBB에게 “경력이 조금 모자라는데 평가원 운영지원과에 확인⁵⁾해 보니 채용시점을 2021. 3월로 하면 경력기준을 충족할 수 있으니 사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달라”고 하였다.

그 결과 위 사람은 BBB의 경력조건을 충족시켜 주기 위해 BBB에게만 당초 채용예정시점을 늦춰 주면 늦어진 기간만큼 경력에 산입할 수 있도록 공적인 증빙 서류가 아닌 사유서로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등 채용상 특혜를 제공하여 나머지 다른 응시자들에게 공정한 채용기회를 부여하지 않게 되었다.

2) 서류 접수기간 종료 후 제출된 개인의 ‘사유서’를 근거로 경력 등을 인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 제10조 제5항에 따르면 서류전형에서는 응시자의 제출서류가 채용자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적격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위 채용공고에 따르면 경력 등을 증빙하는 서류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인정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서류전형 심사를 할 때는 채용공고문의 1.부터 7.까지 각각의 응시자격

5) AAA 연구관은 그 당시 평가원 운영지원과에서 공무직근로자 관리·운영 업무를 하고 있던 DDD 주무관에게 전화를 하여 “공무직근로자 채용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경력이 조금 미달되는 자가 있어 채용시점을 미루면 채용시점을 기준으로 합격이 가능한가?”라고 문의를 하여 DDD 주무관으로부터 “채용시점에서 경력기준을 충족하면 채용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 DDD 주무관은 그 당시 같은 부서 FFF 사무관과 상의하여 “공무직근로자의 경력산정시점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으니 채용절차에 대해서는 채용부서인 신속심사과에서 결정되고 그 책임이 신속심사과에 있다고 하고 이런 경우 향후 공정성 시비가 있을 수 있다.”라고 답변을 하였다고 진술함

기준에 따라서 응시자가 제출한 경력증명서 등의 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경력 등이 응시자격에 미달되는 응시자는 부적격 처리를 하고, 응시자격 중 ‘7. 기타 이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서류전형 적격자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응시자격 ‘1. ~ 6.’의 각각의 자격기준에 상응하는 경력·연구 실적이 있음을 증명하는 공적인 증빙서류를 통해 확인하고 서류 접수기간이 종료되었으면 추가로 서류를 받아주어서는 아니된다.

그런데 ‘가항 1)’과 같이 사전모의에 따라 BBB는 ‘2021. 1. 16. 시점에는 석사학위 취득 후 본인의 경력이 2년 10월이나 현재 평가원 임상연구과에 근무 중이므로 2021. 3월에는 그 경력이 3년 이상을 충족할 수 있다’는 자필 사유서를 작성하여 그 스캔본을 이미 서류접수 기간이 지난 서류전형일 당일인 2021. 1. 19. CCC 주무관에게 전자우편으로 제출하였고, 위 사람은 2021. 1. 19. 서면으로 서류전형 심사를 하면서 공신력 없는 사문서에 불과한 위 사유서를 근거로 BBB를 ‘응시자격 7항’의 기타 이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는 자로 임의로 인정하여 ‘적격’으로 판정하였다.

3) 다른 서류전형 심사위원의 공정한 판단행위 저해

서류전형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는 공무원이 공정한 서류전형 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그 판단에 필요한 중요한 채용서류와 정보 등을 미리 고지받아 부지 또는 착오 등으로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런데 같은 날 위 사람은 다른 서류전형 심사위원인 EEE 연구관(당시 평가원 의약품규격과 근무)에게 “경력이 조금 부족한 응시자가 있는데 기타 이에 상당하는

능력 등이 있다”고 전화로 알려주면서, ‘나항 2)와 같이 BBB를 ‘적격’으로 판단한 근거로 삼은 위 사유서의 작성 이유와 공신력 여부, 사유서가 서류전형 당일 제출된 사실은 따로 알리지 않았다.

그 결과 EEE 연구관은 채용부서인 평가원 신속심사과의 의견을 존중해야겠다고 생각하고 CCC 주무관이 가져다준 BBB가 ‘적격’으로 작성된 심사표에 그대로 서명을 하였고, BBB는 다른 2명의 응시자와 같이 서류전형을 통과하여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되었다.

나. ○○○ 과장의 경우

위 사람은 2020. 9. 1.부터 2022. 11. 11. 감사일 현재까지 평가원 신속심사과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채용업무를 지휘·감독하였다.

2021. 1. 19. 서류전형이 끝나고 위 사람은 AAA 연구관으로부터 서류전형 응시자 총 11명 중 3명이 적격자인데 BBB의 적격사유가 ‘7. 기타 이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표기된 심사결과를 보고 받았는데도 위 ‘가항’과 같이 부당하게 처리된 적격사유의 근거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그대로 ‘서류전형 심사결과’를 결재⁶⁾하였고, 2021. 1. 22. 내·외부 각 1명의 심사위원이 위 서류전형 적격자 3명에 대한 면접시험을 실시하도록 하여 같은 해 1. 26. BBB를 최종합격자로 결정⁷⁾되었다.

그리고 나서(날짜 미상) 위 사람은 AAA 연구관으로부터 BBB의 당시 근무부

6) ‘2021년 1분기 공무원근로자(제품화지원인력) 서류심사 결과 및 면접시험 실시계획 보고’(신속심사과-152호, 2021. 1. 19.)
7) 서류전형 적격자 3명이 면접시험에 응시하여 이 중 BBB를 포함해 2명이 최종 합격되었으나, 나머지 1명은 최종합격 직후인 2021. 1월 말에 채용포기 의사를 밝혀 채용되지 않았음

서인 평가원 임상연구과와의 조율과 경력 때문에 채용시점을 같은 해 3월로 조정해야 한다는 보고를 받았는데도 당초 채용공고문 상의 근무시작일(2021. 1. 26.) 보다 늦어지는 사유가 정당⁸⁾ 것인지 파악도 하지 않는 등 인력공백을 막을 수 있는 조치를 하지 않고 같은 해 3. 3.에서야 채용계약을 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임상연구과에서 ‘전문연구원 다급’(연 27,947천 원)⁹⁾으로 근무하던 BBB는 서류심사 기준상 부적격자인데도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적으로 ‘심사원 다급’ 수준(연 31,700천 원)¹⁰⁾의 더 많은 보수를 받을 수 있는 신속심사과의 사무실무원으로 채용되는 등 위 사람들은 채용질서를 어지럽게 하여 고도로 요구되는 채용업무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였고, BBB를 채용할 목적으로 당초 채용공고문의 근무시작일(2021. 1. 26.) 보다 36일 늦게 채용하면서 그 사이 최종합격자 중 나머지 1명은 최종합격 직후 이미 채용을 포기하여 위 기간 동안 의약품 제품화 지원을 위한 인력이 전혀 충원되지 못하게 되는 등 인력공백이 초래되었다.

관계자 의견 및 검토결과

AAA 연구관은 평가원 운영지원과에서 공무원근로자 관리·운영 업무를 하고 있던 주무관에게 전화하여 위 ‘가항’과 같이 해도 된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변명하나, 당시 그 주무관은 직근상급자인 사무관과 상의하여 채용의 공정성에 문제

8) BBB는 경력직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건 채용을 위해 퇴직 후 신규입용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인지 공무원의 전보와 같이 부서 간 이동의 대상이 아니고 당시 근무부서와 채용일정 등을 조율할 사안이 아니므로 신규채용자의 경력이 적합하였다면 경력상의 이유로 채용이 늦어진다는 것은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음

9) 2021. 2월 기준 BBB는 전문연구원 ‘다급 3호봉’으로 2021년 공무원근로자 표수표에 따라 월기본급(2,328,900원) × 12월로 계산함(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등 제외금액)

10) 2021년 1분기 의약품 제품화지원 인력 채용공고(2020. 12. 22.)의 연봉 하한액(급식비, 명절휴가비 등 제외금액)

가 될 수 있다는 부정적인 답변을 하였다고 하는 등 그 답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 임의로 부당처리한 것은 이유가 될 수 없어 위 사람의 그 과실은 전혀 가볍게만 볼 수 없다.

또한 위 사람은 2022. 11. 24. 2차 문답조사 이후 같은 해 11. 30. BBB가 2013. 8. 23.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2013. 9. 1.부터 2017. 6. 30.까지 같은 학과 대학원에 서 참여한 연구과제 실적 증빙자료¹¹⁾를 제출하면서 응시자격 중 '3. 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연구 실적이 있는 자'에 해당되어 서류전형 적격자라고 소명하였다.

그러나 위 소명은 사후적으로 책임을 모면하려는 것에 불과하고 응시자 BBB와 모의하여 경력증명에 갈음할 수 없는 사유서를 만들어 행사하도록 하고 이를 임의로 인정해 주는 등으로 채용질서를 어지럽게 하여 고도로 요구되는 채용업무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였고, 1개월 이상 인력공백을 초래한 잘못은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위 소명은 이유가 될 수 없다.

징계요구 양정 공무원근로자 채용업무를 부당처리한 AAA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규정에 위배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11) 2021년 1분기 의약품 제품화지원 인력 채용공고(2020. 12. 22.)의 3. 구비서류 및 전형일정 중 서류제출 시 주의사항에 따르면 '경력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제출되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에 확인되지 않을 경우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으며, BBB는 ○○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연구과제를 수행한 증빙서류를 채용서류로써 제출하지 않았음

조치할 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처 운영지원과장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신속심사과에서 공무직근로자 채용업무를 부당처리한 보건연구관 AAA를 「국가공무원법」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경징계) 하시기 바랍니다. **(징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신속심사과장에게 공무직근로자 채용업무의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에 대하여 '경고' 조치하니, 앞으로 공무직근로자 채용절차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훼손되고 인력공백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경고)**

[관련자]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신속심사과	보건연구관	AAA	
"	보건연구관(과장)	○○○	직근상급자

통 보

제 목 공무직근로자 채용자격 증명서류 위·변조 여부 확인방안 미비
관 계 부 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운영지원과
내 용

1. 업무개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운영지원과는 각 부서에서 의약품 등 심사업무를 수행하는 심사원(공무직 근로자)을 분기마다 일괄 채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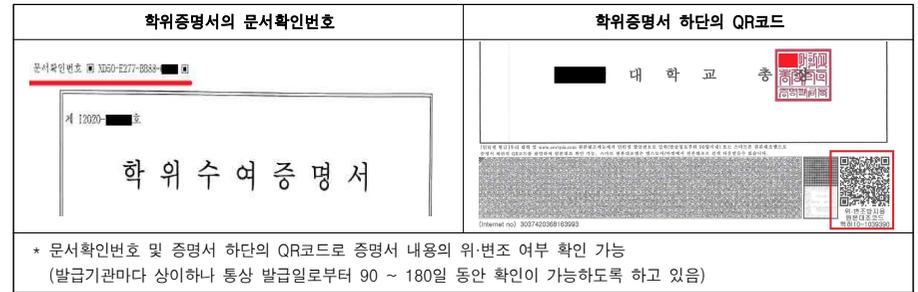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조와 제6조에 따르면 채용에 응시하는 자가 제출하는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는 등 채용절차에서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2018. 6월 「공공기관 채용프로세스별 표준 매뉴얼」을 배포하여 공공기관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부터 제출서류의 인정기준 및 진위 확인방법을 마련하고, 합격자 결정 시 부적격자가 합격되지 않도록 제출서류의 진위를 확인하도록 권고하였으며, 우리 처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식품안전관리원과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의 경우 각 발행기관에 위·변조 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 학위증명서 등을 제출할 것을 채용공고에 명시하고 제출된 서류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또한 국내 대학 등이 발급하는 학위증명서는 [사진]과 같이 발급일로부터 통상 90 ~ 180일의 기간 동안 문서확인번호 또는 QR코드로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사진] 학위증명서에 기재된 진위 여부 확인 방법



따라서 위 부서는 심사원 채용공고에 학위증명서 등 제출된 서류는 각 발행기관에 위·변조 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간 이내인 경우만 인정되도록 고지하고, 채용응시자들로부터 위 기간 이내의 학위증명서 등을 제출받아 서류전형 심사 시 위 제출서류가 거짓으로 작성되지 않았는지 여부를 문서확인번호 및 QR코드를 통해 확인하여야 하며, 만약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학위증명서 등은 합격자에 한해서라도 위 증명서를 발급한 대학 등에 공문을 통해 확인하는 등 채용절차를 철저히 진행하여 채용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타당하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위 부서는 채용자격요건을 증빙하기 위해 채용응시자가 제출한 서류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과 절차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채용공고에 채용응시자들이 합리적인 기간 이내의 학위증명서 등을 제출하도록 고지하지 아니하여 [표]와 같이 최종합격자 15명(2020년 5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제출서류)은 서류전형일로부터 최장 10년 전에 발급되어 그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학위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는데도

그대로 인정하고 있었으며, 추가로 위 증명서의 발급기관인 대학 등으로부터 위·변조 여부를 확인도 하지 않고 있었다.

[표] 서류전형일 당시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던 제출서류 내역

연번	응시하여 채용된 자		응시자 제출서류(발급일)	서류전형일	발급일부터 서류전형일까지 경과일수
	근무부서	이름			
1	의약품규격과	오OO	학사증명서 (2017. 11. 3)	2020. 10. 7	1,069일
2	의약품규격과	방OO	석사증명서 (2016. 8. 28)	2020. 10. 7	1,501일
3	순환신경계약품과	유OO	석사증명서 (2017. 9. 26)	2020. 10. 7	1,107일
4	순환신경계약품과	전OO	석사증명서 (2020. 8. 13)	2021. 6. 15	306일
5	임상시험심사TF	심OO	석사증명서 (2016. 3. 9)	2021. 8. 3	1,973일
6	세포유전자치료제과	류OO	석사증명서 (2020. 5. 21)	2021. 8. 3	439일
7	정형재활기과	신OO	석사증명서 (2016. 3. 31)	2021. 8. 3	1,951일
8	의약품규격과	정OO	학사증명서 (2016. 2. 1)	2021. 10. 6	2,074일
9	임상심사TF	김OO	석사증명서 (2020. 6. 30)	2021. 12. 2	520일
10	첨단의약품질심사과	강OO	석사증명서 (2014. 3. 8)	2021. 12. 2	2,826일
11	약효동등성과	유OO	학사증명서 (2012. 1. 25)	2021. 12. 2	3,599일
12	화장품심사과	정OO	석사증명서 (2019. 5. 3)	2021. 12. 2	944일
13	생물제제과	이OO	석사증명서 (2020. 10. 22)	2022. 3. 10	504일
14	심혈영상기기과	장OO	박사증명서 (2018. 12. 10)	2022. 5. 9	1,246일
15	첨단의료기기과	송OO	의공기사자격 (2021. 1. 4)	2022. 5. 9	490일

자료: 수감기관 자료 재구성

이번 감사기간 중 위 15명이 제출한 서류의 위·변조 여부를 발급한 대학 등에 다시 확인한 결과 거짓으로 작성된 서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심사원을 채용하기 위한 서류전형에서 학위증명서 등의 제출서류가 유효한 것인지 제때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등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확인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운영지원과장**은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채용프로세스별 표준 매뉴얼」 등을 참고하여 채용응시자가 제출하는 학위증명서 등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주 의

제 목 사업비 예산으로 부서운영비 사용 부적절
관 계 부 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료기기심사부 첨단의료기기과
내 용

1. 업무개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료기기심사부 첨단의료기기과는 의료기기 허가심사 체계 마련 및 정보제공 등의 목적으로 ‘의료기기 허가심사 선진화’ 사업예산(2022년 25억 원)을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으며, ‘식의약안전평가원 기본경비’ 등의 예산을 배정받아 위 부의 소속 부서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총괄집행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국가재정법」 제45조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한편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기본적 경비(공공요금 등) 및 지속적인 소규모 운영 경비(전산소모품 등)는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편성지침」에 따라 ‘기본경비’로 편성 되어 있다.

따라서 위 부서는 사업비 예산의 목적에 맞지 않게 예산을 집행할 수 없으며, 사업과 관련 없는 위 부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기본경비’ 예산으로 집행 하여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위 부서는 [별표] “의료기기 허가심사 선진화 사업비의 기본경비성 지출현황(2019. 5. 1. ~ 2022. 9. 30.)”과 같이 ‘의료기기 허가심사 선진화’ 사업예산을 기본경비인 사무실 인터넷TV요금, 사무용 전화기 구매, 신문구독 대금 등으로 2019. 5. 1. ~ 2022. 9. 30. 기간 동안 총 259건 합계 14,498,910원을 집행하였다.

그 결과 ‘의료기기 허가심사 선진화’ 사업목적과 관계없이 임의적으로 예산을 사용하여 위 금액만큼 사업비 집행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되었다.

조치할 사항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료기기심사부 첨단의료기기과장은 앞으로 사업비를 사업목적과 관계없이 임의로 기본경비로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부서주의)**

[별표] 의료기기 허가심사 선진화 사업비의 기본경비성 지출현황(2019. 5. 1. ~ 2022. 9. 30.)

(단위: 원)

연번	지출일자	세목명	지출 내역	지출액
1	2019. 5. 14.	일반수용비	[첨단의료기기과] 직원명패 구입대금	66,000
2	2019. 5. 29.	일반수용비	[의료기기심사부] 2019년 5월 신문요금	13,000
3	2019. 5. 29.	일반수용비	[의료기기심사부] 2019년 5월 신문요금	20,000
4	2019. 6. 3.	일반수용비	[정형재활기기과] 직원명패 구입대금	99,000
5	2019. 6. 14.	일반수용비	[첨단의료기기과] 직원명패 구입대금	33,000
6	2019. 6. 21.	일반수용비	[의료기기심사부] 2019년 6월 신문요금	13,000
7	2019. 6. 21.	일반수용비	[의료기기심사부] 2019년 6월 신문요금	20,000
8	2019. 6. 24.	일반수용비	[구강소화기기과] 2019년 5월 소모성물품 구입비(명패)	14,300
9	2019. 7. 2.	일반수용비	[구강소화기기과] 6월 인쇄비(명함)	19,800
10	2019. 7. 31.	일반수용비	[의료기기심사부] 2019년 7월 신문요금	13,000
11	2019. 7. 31.	일반수용비	[의료기기심사부] 2019년 7월 신문요금	20,000
12	2019. 7. 31.	일반수용비	[의료기기심사부] 2019년 7월 신문요금	35,000
13	2019. 7. 31.	일반수용비	[정형재활기기과] 직원명패 구입대금	33,000
14	2019. 8. 6.	일반수용비	[첨단의료기기과] 직원 명함 인쇄비	148,500
15	2019. 8. 30.	일반수용비	[의료기기심사부] 2019년 8월 신문요금	13,000
16	2019. 8. 30.	일반수용비	[의료기기심사부] 2019년 8월 신문요금	20,000
17	2019. 8. 30.	일반수용비	[의료기기심사부] 2019년 8월 신문요금	35,000
18	2019. 9. 2.	일반수용비	[첨단의료기기과] 직원명패 구입대금	14,300
19	2019. 9. 2.	일반수용비	[구강소화기기과] 8월 인쇄비(명함)	19,800
20	2019. 10. 2.	일반수용비	[의료기기심사부] 2019년 9월 신문요금	13,000
21	2019. 10. 2.	일반수용비	[의료기기심사부] 2019년 9월 신문요금	20,000
22	2019. 10. 2.	일반수용비	[의료기기심사부] 2019년 9월 신문요금	35,000
23	2019. 10. 4.	일반수용비	[구강소화기기과] 2019년 9월 소모성 물품구입비(무선리모컨)	88,000
24	2019. 10. 29.	일반수용비	[의료기기심사부] 2019년 10월 신문요금	13,000
25	2019. 10. 29.	일반수용비	[의료기기심사부] 2019년 10월 신문요금	20,000
26	2019. 11. 8.	일반수용비	[첨단의료기기과] 직원명패 구입대금	33,000
27	2019. 11. 8.	일반수용비	[첨단의료기기과] 직원 명함 인쇄비	99,000
28	2019. 11. 25.	일반수용비	[의료기기심사부] 2019년 11월 신문요금	13,000
29	2019. 11. 25.	일반수용비	[의료기기심사부] 2019년 11월 신문요금	20,000
30	2019. 12. 17.	일반수용비	[의료기기심사부] 2019년 12월 신문요금	13,000
31	2019. 12. 17.	일반수용비	[의료기기심사부] 2019년 12월 신문요금	20,000
32	2020. 1. 21.	일반수용비	[의료기기심사부] 2020년 1월 신문요금	13,000
33	2020. 1. 21.	일반수용비	[의료기기심사부] 2020년 1월 신문요금	20,000
34	2020. 1. 21.	일반수용비	[의료기기심사부] 2020년 1월 신문요금	35,000
35	2020. 2. 5.	일반수용비	[체외진단기기과] 직원 명함 인쇄비	88,000
36	2020. 2. 7.	일반수용비	[첨단의료기기과] 직원명패 구입대금	66,000

연번	지출일자	세목명	지출 내역	지출액
37	2020. 2. 21.	일반수용비	[구강소화기기과] 직원 명패 구입대금	55,000
38	2020. 2. 27.	일반수용비	[의료기기심사부] 2020년 2월 신문요금	13,000
39	2020. 2. 27.	일반수용비	[의료기기심사부] 2020년 2월 신문요금	20,000
40	2020. 3. 6.	일반수용비	[체외진단기기과] 직원 명함 등 인쇄비	76,000
41	2020. 3. 13.	일반수용비	[첨단의료기기과] 직원 명패 구입대금	33,000
42	2020. 3. 25.	일반수용비	[의료기기심사부] 2020년 3월 신문요금	13,000
43	2020. 3. 25.	일반수용비	[의료기기심사부] 2020년 3월 신문요금	20,000
44	2020. 3. 27.	일반수용비	[첨단의료기기과] 소모성물품(프리세이버)	742,500
45	2020. 4. 14.	일반수용비	[정형재활기기과] 소모성물품(PC 파워)	55,000
46	2020. 4. 14.	일반수용비	[정형재활기기과] 청렴캠페인 어깨띠 인쇄비	143,000
47	2020. 4. 28.	일반수용비	[의료기기심사부] 2020년4월 신문요금	13,000
48	2020. 4. 28.	일반수용비	[의료기기심사부] 2020년4월 신문요금	20,000
49	2020. 5. 11.	일반수용비	[정형재활기기과]소모성물품(명패) 구입비	66,000
50	2020. 5. 29.	일반수용비	[의료기기심사부] 2020년 5월 신문요금	13,000
51	2020. 5. 29.	일반수용비	[의료기기심사부] 2020년 5월 신문요금	20,000
52	2020. 6. 1.	공공요금및제세	[심혈관계기기과] 2020년 5월 인터넷 사용요금	30,430
53	2020. 6. 1.	공공요금및제세	[첨단의료기기과] 2020년 5월 인터넷티비 사용요금	28,600
54	2020. 6. 2.	공공요금및제세	[디지털헬스기기T/F] 2020년 5월 인터넷티비	28,690
55	2020. 6. 8.	일반수용비	[첨단의료기기과] 직원 명패 구입대금	88,000
56	2020. 6. 8.	일반수용비	[첨단의료기기과] 멀티탭 등 4중 구입대금	166,000
57	2020. 6. 8.	일반수용비	[첨단의료기기과] 명함 구입대금	90,000
58	2020. 6. 8.	일반수용비	[첨단의료기기과]명패 구입대금	11,000
59	2020. 6. 8.	일반수용비	[첨단의료기기과] 연필깎이 등 14종 구입대금	764,010
60	2020. 6. 9.	일반수용비	[구강소화기기과] 인쇄비(명함) 지급요청	132,000
61	2020. 6. 25.	일반수용비	[의료기기심사부] 2020년 6월 신문요금	13,000
62	2020. 6. 25.	일반수용비	[의료기기심사부] 2020년 6월 신문요금	20,000
63	2020. 6. 25.	공공요금및제세	[디지털헬스기기T/F] 2020년 6월 인터넷티비 사용요금	28,690
64	2020. 7. 1.	공공요금및제세	[심혈관계기기과] 2020년 6월 인터넷 사용요금	22,000
65	2020. 7. 1.	일반수용비	[첨단의료기기과] 사무용품 구입비	33,000
66	2020. 7. 7.	일반수용비	[첨단의료기기과] 가림판 구매 대금	407,000
67	2020. 7. 10.	일반수용비	[체외진단기기과] 직원 명함 등 인쇄비	72,000
68	2020. 7. 27.	일반수용비	[정형재활기기과] 소모성 물품 구입대금	33,000
69	2020. 7. 27.	일반수용비	[의료기기심사부] 2020년 7월 신문요금	13,000
70	2020. 7. 27.	일반수용비	[의료기기심사부] 2020년 7월 신문요금	20,000
71	2020. 7. 30.	공공요금및제세	[심혈관계기기과] 2020년 7월 인터넷 사용요금	20,460
72	2020. 7. 30.	공공요금및제세	[디지털헬스기기T/F] 2020년 7월 인터넷티비	28,690
73	2020. 8. 4.	일반수용비	[첨단의료기기과] 사무용품 구입비	14,300
74	2020. 8. 18.	일반수용비	[의료기기심사부] 소모품성물품(명함)	45,000

연번	지출일자	세목명	지출 내역	지출액
75	2020. 8. 26.	일반수용비	[구강소화기과] 직원 명패 구입대금	14,300
76	2020. 8. 26.	일반수용비	[구강소화기과] 직원 명패 구입대금	14,300
77	2020. 8. 26.	공공요금및제세	[디지털헬스기기T/F] 2020년 8월 인터넷티비 사용요금	28,690
78	2020. 8. 26.	공공요금및제세	[심혈관계과] 2020년 8월 인터넷 사용요금	20,460
79	2020. 8. 31.	일반수용비	[의료기기심사부] 2020년 8월 신문요금	13,000
80	2020. 8. 31.	일반수용비	[의료기기심사부] 2020년 8월 신문요금	20,000
81	2020. 9. 9.	일반수용비	[구강소화기과] 인쇄비(명함)	66,000
82	2020. 9. 9.	일반수용비	[첨단의료기기과] 직원 명함 인쇄비	15,000
83	2020. 9. 15.	일반수용비	[구강소화기과] 직원 명패 구입대금	38,500
84	2020. 9. 22.	공공요금및제세	[디지털헬스기기T/F] 2020년 9월 인터넷티비	28,690
85	2020. 9. 25.	일반수용비	[첨단의료기기과] 직원 명함 인쇄비	45,000
86	2020. 10. 7.	일반수용비	[의료기기심사부] 2020년 9월 신문요금	13,000
87	2020. 10. 7.	일반수용비	[의료기기심사부] 2020년 9월 신문요금	20,000
88	2020. 10. 8.	일반수용비	[체외진단기기과] 직원 명함 제작비	30,000
89	2020. 10. 28.	일반수용비	[정형재활기기과]소모성 물품(명패)	38,500
90	2020. 10. 29.	공공요금및제세	[심혈영상기기과] 2020년 10월 인터넷 사용요금	40,920
91	2020. 11. 2.	일반수용비	[의료기기심사부] 2020년 10월 신문요금	13,000
92	2020. 11. 2.	일반수용비	[의료기기심사부] 2020년 10월 신문요금	20,000
93	2020. 11. 2.	공공요금및제세	디지털헬스기기 T/F] 2020년10월 인터넷티비 사용요금	28,690
94	2020. 11. 18.	일반수용비	[체외진단기기과] 명함 인쇄비	15,000
95	2020. 11. 23.	공공요금및제세	[심혈영상기기과] 2020년 11월 인터넷 사용요금	20,460
96	2020. 11. 23.	일반수용비	[의료기기심사부] 2020년 11월 신문요금	13,000
97	2020. 11. 23.	일반수용비	[체외진단기기과] 일반수용비 (명패)	12,000
98	2020. 11. 23.	일반수용비	[의료기기심사부] 2020년 11월 신문요금	20,000
99	2020. 11. 23.	공공요금및제세	[디지털헬스기기T/F] 2020년 11월 인터넷티비	28,690
100	2020. 11. 24.	일반수용비	[첨단의료기기과] 직원 명함 구입대금 지급결의	15,000
101	2020. 12. 1.	일반수용비	[정형재활기기과] 소모성 물품(명패) 구입대금	33,000
102	2020. 12. 2.	일반수용비	[심혈영상기기과] 직원명패 구입대금	33,000
103	2020. 12. 3.	일반수용비	[첨단의료기기과] 소모성물품(명패)	33,000
104	2020. 12. 3.	일반수용비	[심혈영상기기과] 직원 명함 구입비	264,000
105	2020. 12. 3.	공공요금및제세	[체외진단기기과] 2020년 11월 인터넷 티비 사용요금	20,460
106	2020. 12. 10.	일반수용비	[첨단의료기기과] 소모성물품(폐지함 비닐팩 등)	421,320
107	2020. 12. 11.	일반수용비	[의료기기심사부] 소모성물품(칸막이) 구입비	1,088,500
108	2020. 12. 17.	일반수용비	[첨단의료기기과] 소모성물품(명함) 구입비	30,000
109	2020. 12. 18.	일반수용비	[정형재활기기과] 소모성 물품(명패) 구입대금	33,000
110	2020. 12. 24.	공공요금및제세	[체외진단기기과] 2020년 12월 인터넷 티비 사용요금	36,850
111	2020. 12. 24.	공공요금및제세	[디지털헬스기기 T/F] 2020년 12월 인터넷티비 사용요금	28,690
112	2021. 1. 27.	일반수용비	[첨단의료기기과] 소모성물품(명함) 구입비	105,000

연번	지출일자	세목명	지출 내역	지출액
113	2021. 1. 28.	일반수용비	[첨단의료기기과] 소모성물품(명패) 구입비	16,500
114	2021. 1. 28.	일반수용비	[의료기기심사부] 2021년 1월 신문요금	13,000
115	2021. 1. 28.	일반수용비	[의료기기심사부] 2021년 1월 신문요금	13,000
116	2021. 1. 28.	일반수용비	[의료기기심사부] 2021년 1월 신문요금	40,000
117	2021. 1. 28.	공공요금및제세	[디지털헬스기기 TF] 2021년 1월 인터넷티비 사용요금	28,690
118	2021. 1. 28.	공공요금및제세	[체외진단기기과] 2021년 1월 인터넷 티비 사용요금	26,290
119	2021. 2. 2.	일반수용비	[첨단의료기기과] 소모성물품(명함) 구입비	15,000
120	2021. 2. 15.	일반수용비	[구강소화기과] 직원 명패 구입대금	38,500
121	2021. 2. 17.	공공요금및제세	[심혈영상기기과] 2021년 1월 인터넷 사용요금	61,380
122	2021. 2. 24.	공공요금및제세	[체외진단기기과] 2021년 2월 인터넷티비	26,290
123	2021. 2. 25.	일반수용비	[의료기기심사부] 2021년 2월 신문요금	13,000
124	2021. 2. 25.	일반수용비	[의료기기심사부] 2021년 2월 신문요금	20,000
125	2021. 2. 25.	일반수용비	[의료기기심사부] 2021년 2월 신문요금	35,000
126	2021. 2. 25.	공공요금및제세	[디지털헬스기기T/F] 2021년 2월 인터넷티비	28,690
127	2021. 3. 5.	일반수용비	[구강소화기과] 명함 인쇄비	22,000
128	2021. 3. 9.	일반수용비	직원 명함 등 인쇄비	225,000
129	2021. 3. 18.	일반수용비	[심혈영상기기과] 소모성물품(명패) 구입비	38,500
130	2021. 3. 23.	공공요금및제세	[첨단의료기기과] 2021년 3월 인터넷 사용요금	19,720
131	2021. 3. 23.	공공요금및제세	[디지털헬스기기TF팀] 2021년 3월 인터넷티비 사용요금	28,690
132	2021. 3. 29.	일반수용비	[의료기기심사부] 2021년 3월 신문구독료	13,000
133	2021. 3. 29.	일반수용비	[의료기기심사부] 2021년 3월 신문구독료	20,000
134	2021. 3. 29.	일반수용비	[의료기기심사부] 2021년 3월 신문구독료	35,000
135	2021. 3. 29.	공공요금및제세	[체외진단기기과] 2021년 3월 인터넷 티비 사용요금	26,290
136	2021. 4. 8.	일반수용비	[첨단의료기기과] 소모성물품(명함) 구입비	60,000
137	2021. 4. 8.	일반수용비	[디지털헬스TF팀] 소모성물품(명함) 구입비	15,000
138	2021. 4. 26.	일반수용비	[의료기기심사부] 2021년 4월 신문구독료	13,000
139	2021. 4. 26.	일반수용비	[첨단의료기기과] 소모성 물품 (의차 바퀴 교체) 구입비	35,000
140	2021. 4. 26.	일반수용비	[의료기기심사부] 2021년 4월 신문구독료	20,000
141	2021. 4. 26.	일반수용비	[의료기기심사부] 2021년 4월 신문구독료	35,000
142	2021. 4. 26.	공공요금및제세	[디지털헬스기기TF팀]2021년 4월 인터넷티비 사용요금	28,690
143	2021. 4. 26.	공공요금및제세	[첨단의료기기과] 2021년 4월 인터넷 요금	20,460
144	2021. 4. 29.	공공요금및제세	[체외진단기기과] 2021년 4월 인터넷 티비 사용요금	26,290
145	2021. 5. 25.	일반수용비	[첨단의료기기과] 2021년 5월 신문구독료	13,000
146	2021. 5. 25.	일반수용비	[첨단의료기기과] 2021년 5월 신문구독료	20,000
147	2021. 5. 25.	일반수용비	[첨단의료기기과] 2021년 5월 신문구독료	35,000
148	2021. 5. 25.	공공요금및제세	[체외진단기기과] 2021년 5월 인터넷 티비 사용 요금	26,290
149	2021. 5. 26.	공공요금및제세	[디지털헬스기기TF팀] 2021년 5월 인터넷티비 사용 요금	28,690
150	2021. 6. 10.	일반수용비	[구강소화기과] 소모성물품(명함) 구입비	22,000

연번	지출일자	세목명	지출 내역	지출액
151	2021. 6. 16.	일반수용비	[구강소화기과] 소모성 물품(의자팔걸이 교체 등 3건)구입비	198,000
152	2021. 6. 16.	공공요금및제세	[체외진단기과] 2021년 6월 인터넷 티비 사용요금	26,290
153	2021. 6. 18.	일반수용비	[체외진단기과] 소모성물품(직원명패 및 명함) 구입대금	70,000
154	2021. 6. 23.	공공요금및제세	[첨단의료기기과] 2021년 6월 인터넷티비 사용 요금	28,690
155	2021. 6. 25.	일반수용비	[심혈형상기과] 소모성물품(직원명패) 구입 대금	71,500
156	2021. 6. 25.	일반수용비	[첨단의료기기과] 2021년 6월 신문구독료	13,000
157	2021. 6. 25.	일반수용비	[첨단의료기기과] 2021년 6월 신문구독료	20,000
158	2021. 6. 25.	일반수용비	[첨단의료기기과] 2021년 6월 신문구독료	35,000
159	2021. 7. 5.	일반수용비	[정형재활기과] 소모성 물품(명패) 구입 대금	38,500
160	2021. 7. 15.	공공요금및제세	[체외진단기과] 2021년 7월 인터넷 티비 사용요금	26,290
161	2021. 7. 20.	일반수용비	[체외진단기과] 소모성물품(직원명패 및 명함) 구입대금	240,000
162	2021. 7. 20.	공공요금및제세	[첨단의료기기과] 2021년 7월 인터넷티비 사용요금	28,690
163	2021. 7. 20.	공공요금및제세	[첨단의료기기과] 2021년 7월 인터넷 사용 요금	20,460
164	2021. 7. 21.	일반수용비	[첨단의료기기과] 2021년 7월 신문구독료	13,000
165	2021. 7. 21.	일반수용비	[첨단의료기기과] 2021년 7월 신문구독료	20,000
166	2021. 7. 21.	일반수용비	[첨단의료기기과] 2021년 7월 신문구독료	35,000
167	2021. 7. 22.	일반수용비	[구강소화기과] 사무용품 구입비(발신자표시기능전화기 등 27건)	1,164,790
168	2021. 8. 5.	일반수용비	[첨단의료기기과] 소모성물품(명패 등)	27,000
169	2021. 8. 17.	공공요금및제세	[첨단의료기기과] 2021년 8월 인터넷 사용 요금	20,460
170	2021. 8. 17.	공공요금및제세	[체외진단기과] 2021년 8월 인터넷 티비 사용요금	26,290
171	2021. 8. 23.	공공요금및제세	[첨단의료기기과] 2021년 8월 인터넷티비 사용 요금	28,690
172	2021. 8. 30.	일반수용비	[첨단의료기기과] 2021년 8월 신문구독료	13,000
173	2021. 8. 30.	일반수용비	[첨단의료기기과] 2021년 8월 신문구독료	20,000
174	2021. 9. 14.	공공요금및제세	[첨단의료기기과] 2021년 9월 인터넷티비	28,690
175	2021. 9. 16.	공공요금및제세	[체외진단기과] 2021년 9월 인터넷 티비 사용요금	26,290
176	2021. 9. 28.	일반수용비	[정형재활기과] 소모성물품(명패) 구입비	38,500
177	2021. 9. 28.	일반수용비	[정형재활기과] 소모성물품(명함) 구입비	104,500
178	2021. 9. 28.	일반수용비	[첨단의료기기과] 2021년 9월 신문구독료	13,000
179	2021. 9. 28.	일반수용비	[첨단의료기기과] 2021년 9월 신문구독료	20,000
180	2021. 10. 13.	공공요금및제세	[첨단의료기기과]2021년 10월 인터넷티비 사용 요금	28,690
181	2021. 10. 13.	공공요금및제세	[체외진단기과] 2021년 10월 인터넷 티비 사용요금	26,290
182	2021. 10. 14.	일반수용비	[심혈형상기과] 소모성물품(PC 파워 교체)비용	55,000
183	2021. 10. 29.	일반수용비	[첨단의료기기과] 2021년 10월 신문구독료	13,000
184	2021. 10. 29.	일반수용비	[첨단의료기기과] 2021년 10월 신문구독료	20,000
185	2021. 10. 29.	일반수용비	[첨단의료기기과] 2021년 10월 신문구독료	35,000
186	2021. 11. 16.	공공요금및제세	[첨단의료기기과] 2021년 11월 인터넷티비 사용 요금	28,690
187	2021. 11. 16.	공공요금및제세	[체외진단기과] 2021년 11월 인터넷 티비 사용 요금	26,290
188	2021. 11. 22.	일반수용비	[첨단의료기기과] 2021년 11월 신문구독료	13,000

연번	지출일자	세목명	지출 내역	지출액
189	2021. 11. 22.	일반수용비	[첨단의료기기과] 2021년 11월 신문구독료	20,000
190	2021. 11. 22.	일반수용비	[첨단의료기기과] 2021년 11월 신문구독료	35,000
191	2021. 12. 14.	공공요금및제세	[첨단의료기기과] 2021년 12월 인터넷티비 사용 요금	28,690
192	2021. 12. 14.	공공요금및제세	[체외진단기과] 2021년 12월 인터넷 티비 사용 요금	26,290
193	2021. 12. 23.	일반수용비	[첨단의료기기과] 2021년 12월 신문구독료	13,000
194	2021. 12. 23.	일반수용비	[첨단의료기기과] 2021년 12월 신문구독료	20,000
195	2021. 12. 23.	일반수용비	[첨단의료기기과] 2021년 12월 신문구독료	35,000
196	2022. 2. 17.	일반수용비	[첨단의료기기과] 2022년 1월 신문구독료	13,000
197	2022. 2. 17.	일반수용비	[첨단의료기기과] 2022년 1월 신문구독료	20,000
198	2022. 2. 17.	일반수용비	[첨단의료기기과] 2022년 1월 신문구독료	35,000
199	2022. 2. 22.	일반수용비	[첨단의료기기과] 2022년 2월 신문구독료	13,000
200	2022. 2. 22.	일반수용비	[첨단의료기기과] 2022년 2월 신문구독료	20,000
201	2022. 2. 22.	일반수용비	[첨단의료기기과] 2022년 2월 신문구독료	35,000
202	2022. 2. 22.	공공요금및제세	[첨단의료기기과] 2022년 1~2월 인터넷티비 사용 요금	57,380
203	2022. 2. 28.	공공요금및제세	[체외진단기과] 2022년 1월, 2월 인터넷 티비 사용요금	53,050
204	2022. 3. 8.	일반수용비	[첨단의료기기과] 소모성물품(명함,명패) 구입비	27,000
205	2022. 3. 14.	공공요금및제세	[첨단의료기기과] 2022년 3월 인터넷티비 사용 요금	28,690
206	2022. 3. 21.	공공요금및제세	[체외진단기과] 2022년 3월 인터넷 티비 사용요금 지급 결의	26,290
207	2022. 3. 24.	일반수용비	[첨단의료기기과] 2022년 3월 신문구독료	13,000
208	2022. 3. 24.	일반수용비	[첨단의료기기과] 2022년 3월 신문구독료	20,000
209	2022. 3. 24.	일반수용비	[첨단의료기기과] 2022년 3월 신문구독료	35,000
210	2022. 4. 13.	일반수용비	[첨단의료기기과] 소모성물품(명함) 구입비	18,000
211	2022. 4. 14.	공공요금및제세	[디지털헬스규제지원과] 2022년 4월 인터넷 티비 사용요금	28,690
212	2022. 4. 19.	공공요금및제세	[체외진단기과] 2022년 4월 인터넷 티비 사용요금	26,290
213	2022. 4. 20.	일반수용비	[체외진단기과] 소모성물품(직원명패 및 명함) 구입대금	154,000
214	2022. 4. 21.	일반수용비	[첨단의료기기과] 2022년 4월 신문구독료	13,000
215	2022. 4. 21.	일반수용비	[첨단의료기기과] 2022년 4월 신문구독료	20,000
216	2022. 4. 21.	일반수용비	[첨단의료기기과] 2022년 4월 신문구독료	35,000
217	2022. 4. 26.	일반수용비	[디지털헬스규제지원과] 소모성물품(책상유리)	231,000
218	2022. 5. 16.	일반수용비	[구강소화기과] 소모성물품(명패)구입비	16,500
219	2022. 5. 16.	일반수용비	구강소화기과 소모성물품(명함)구입비	22,000
220	2022. 5. 16.	공공요금및제세	[체외진단기과] 2022년 5월 인터넷 티비 사용요금	26,290
221	2022. 5. 24.	일반수용비	[디지털헬스규제지원과] 소모성물품(명패) 구입대금	374,000
222	2022. 5. 24.	일반수용비	[디지털헬스규제지원과] 소모성물품(명함) 구입대금	138,000
223	2022. 5. 24.	공공요금및제세	[디지털헬스규제지원과] 2022년 5월 인터넷 티비 사용요금	28,690
224	2022. 5. 27.	일반수용비	[정형재활기과] 소모성물품(명패) 구입 대금	38,500
225	2022. 5. 27.	일반수용비	[첨단의료기기과] 2022년 5월 신문구독료	13,000
226	2022. 5. 27.	일반수용비	[첨단의료기기과] 2022년 5월 신문구독료	20,000

연번	지출일자	세목명	지출 내역	지출액
227	2022. 5. 27.	일반수용비	[첨단의료기기과] 2022년 5월 신문구독료	35,000
228	2022. 6. 13.	일반수용비	[구강소화기기과] 소모성물품(명함) 구입비	44,000
229	2022. 6. 13.	일반수용비	[구강소화기기과] 소모성물품(책상유리)구입비	154,000
230	2022. 6. 17.	일반수용비	[심혈영상기기과] 소모성물품(명함) 구입대금	30,000
231	2022. 6. 17.	공공요금및제세	[체외진단기기과] 2022년 6월 인터넷 티비 사용요금	26,290
232	2022. 6. 21.	일반수용비	[첨단의료기기과] 2022년 6월 신문구독료	13,000
233	2022. 6. 21.	일반수용비	[첨단의료기기과] 2022년 6월 신문구독료	20,000
234	2022. 6. 21.	일반수용비	[첨단의료기기과] 2022년 6월 신문구독료	35,000
235	2022. 6. 21.	공공요금및제세	[디지털헬스규제지원과] 2022년 6월 인터넷 티비 사용요금	28,690
236	2022. 6. 24.	일반수용비	[심혈영상기기과] 소모성물품(명함) 구입비	15,000
237	2022. 6. 27.	일반수용비	[첨단의료기기과] 소모성물품(명함) 구입비	16,000
238	2022. 6. 29.	일반수용비	[디지털헬스규제지원과] 소모성물품(책상유리, 잠금장치) 구입대금	138,000
239	2022. 7. 15.	공공요금및제세	[체외진단기기과] 2022년 7월 인터넷 티비 사용요금	26,290
240	2022. 7. 21.	공공요금및제세	[디지털헬스규제지원과] 2022년 7월 인터넷 티비 사용 요금	28,690
241	2022. 7. 22.	일반수용비	[첨단의료기기과] 2022년 7월 신문구독료	13,000
242	2022. 7. 22.	일반수용비	[첨단의료기기과] 2022년 7월 신문구독료	20,000
243	2022. 7. 22.	일반수용비	[첨단의료기기과] 2022년 7월 신문구독료	35,000
244	2022. 7. 28.	일반수용비	[심혈영상기기과] 소모성물품(명함) 구입대금	15,000
245	2022. 8. 5.	일반수용비	[체외진단기기과] 소모성물품(탁자유리) 구입비	160,000
246	2022. 8. 10.	일반수용비	[첨단의료기기과] 소모성물품(명함,명패) 구입비	88,000
247	2022. 8. 31.	일반수용비	[심혈영상기기과] 소모성물품(명함) 구입비	15,000
248	2022. 8. 31.	일반수용비	[심혈영상기기과] 소모성물품(책상유리) 구입대금	88,000
249	2022. 8. 31.	일반수용비	[첨단의료기기과] 2022년 8월 신문구독료	13,000
250	2022. 8. 31.	일반수용비	[첨단의료기기과] 2022년 8월 신문구독료	20,000
251	2022. 8. 31.	공공요금및제세	[체외진단기기과] 2022년 8월 인터넷 티비	26,290
252	2022. 8. 31.	공공요금및제세	[디지털헬스규제지원과] 2022년 8월 인터넷 티비 사용요금	28,690
253	2022. 9. 8.	일반수용비	[정형재활기기과] 소모성물품(명패) 구입 대금	44,000
254	2022. 9. 16.	일반수용비	[구강소화기기과] 소모성물품(명함 및 명패) 구입비	130,000
255	2022. 9. 20.	공공요금및제세	[체외진단기기과] 2022년 9월 인터넷 티비	26,290
256	2022. 9. 22.	공공요금및제세	[디지털헬스규제지원과] 2022년 9월 인터넷 티비 사용요금	28,690
257	2022. 9. 26.	일반수용비	[첨단의료기기과] 2022년 9월 신문구독료	13,000
258	2022. 9. 26.	일반수용비	[첨단의료기기과] 2022년 9월 신문구독료	20,000
259	2022. 9. 26.	일반수용비	[첨단의료기기과] 2022년 9월 신문구독료	35,000
합 계				14,498,910

자료: 수감기관 자료 재구성